국제환경규제동향과 대응방안

〈1〉

■ 산업연구원

Ⅰ. 국제환경규제 동향

1. 개 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차원의 UN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파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어느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냉전종식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환경문제가 주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환경협약들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어 우리의 무역 및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주의제로 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환경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

현재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기보전, 유해물질규제, 동식물보호, 해양환경보호, 수질보호, 자연자원보전 등으로 분류되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수는 18개에 달한다.

부문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1933-1990)

부 문	협약수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수
해양오염	41	0
해양어업 및 포경업	25	0
동식물보호	19	10
핵 및 대기오염	13	1
남극대륙	6	0
식물위생규제	5	4
매뚜기 통제	4	0
국경수질	4	0
동물학대	3	1
유해폐기물	2	2
기타	6	0
계	128	18

자료 : GATT / 1529, 3 February 1992.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은 CFC 및 Halon 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85년에 제정되었으며, 1987년에는 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채택되어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가입국수는 12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27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동년 5월 27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15종류의 CFC, 3종류의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등의 물질의 생산 사용과 가입국간 및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대상물질(총 20종)과 관련제품의 교역이 규제되고 있다.

1992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에서는 삭감일정에 없던 HCFC 40종 및 HCFC 1종 등 과도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전환하고 규제대

상물질의 삭감일정도 대폭 단축한 제2차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바젤 협약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이 국경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3월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호주가 동협약에 20번째로 가입함에 따라 1992년 5월 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 가입국수는 49개국이고 지난 동년 12월에는 제1차 가입국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가입국들에게는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18개 산업폐기물, 27개 중금속, 2개 생활폐기물)의 규제대상물질에 대해 국경간 이동금지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자국영토내에서의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한 자국영토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할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

규제대상폐기물은 앞으로 열릴 가입국회의를 통해 추가조정될 전망인데 고무, 니켈, 알루미늄, 주석, 망간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3)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 GHGs)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구온난화현상,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동협약은 1988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의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지난 1991년 1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5차례의 정부간협상회의(INC)를 거쳐 리우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51개국이 가입함으로써 금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동협약은 국가간 이해상충으로 추상적인 원칙이나 방안제시에 그쳤으나 모든 제약국이 이행해야 할 일반의무조항과 선진국들이 이행할 사항인 특별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4) 기타협약

이밖에 무절제한 국제교역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5년 7월 발효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 CITES)과 인구증가 및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물자원의 멸종방지, 유전자원에의 적절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CITES는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규제대상동식물의 수출입을 완전금지하거나 제한적인 금지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동협약에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난해말 발효되었으며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지정하여 감시하며, 생태계, 서식지 및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이입을 방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회복과 서식지에의 재도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3. 개별국가에 의한 조치

전지구적인 환경협약의 체결과는 별도로 각국별로도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국들에게 포장지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1) 미 국

1990년 10월에 통과된 신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은 유해가스배출원에 방지장치의 장착과 저공해 및 개량휘발유의 생산 등을 의무화하고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과 연료에 대한 규제로 인한 미국산업계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증가와 대외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역상대국에도 동일한 대기오염방지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양오염에 관한 슈퍼펀드법에 의거하여 토양의 직접오염자 뿐만 아니라 그 후의 토지소유자, 유해

최근에 들어와 냉전종식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환경문제가 주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환경협약들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어 우리의 무역 및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운반관계자 등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일괄예산조정법에 오존세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하여 특별물품세의 형태로 오존세를 부과하고 있다.

(2) EC

EC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에너지세를 신설하여 1993년 1월부터 석유환산기준 배럴당 평균 3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매년 1달러씩 인상, 오는 2000년에는 배럴당 10달러로 한다는 법안을 제정해 두고 있다.

또한 EC는 바젤협약 당사국인 EFTA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최종처리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생가능한 유해폐기물의 경우 바젤협약 당사국이면서 EC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한 비OECD회원국을 제외한 국가에의 수출을 오는 2000년부터 금지시킬 방침이다.

(3) 덴마크

덴마크는 1981년 맥주와 음료용기의 재활용확대를 위해 예탁금징수와 회수계획의 수립을 주내용으로 한 음료용기회수제도를 도입하여 맥주 및 음료제조회사에 대해 용기를 회수하는 장소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원활한 회수를 위한 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재활용 가능한 용기로만 제한함으로써 맥주 및 음료용기는 실질적으로 유리병에 국한하고 있다.

이로써 여타국가들이 덴마크에 맥주나 음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덴마크환경청이 승인한 형상과 소재로 제조한 병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빈병의 회수를 위한 장소 및 설비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

이후 EC내에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독일은 플라스틱용기에 대해 덴마크와 유사한 강제예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탈리아는 플라스틱포장을 금지하여 외국의 플라스틱포장제품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4) 독 일

독일은 1991년 6월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포장폐기물의 회수의무를 규정한 「포장폐기물의 억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상품판매자에게 판매구역에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수집용기 설치, 포장폐기물의 무료 회수, 회수된 포장폐기물의 재이용·재처리 또는 생산자에의 반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생산자에게는 반환된 포장폐기물의 재이용 또는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며, 판매자 및 생산자에게 사후 일정비율 이상의 포장폐기물을 회수, 재이용 또는 재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음료, 세제, 스프레이식 도장용기 등에 대해서는 예탁금방식에 의한 회수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운송용포장물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는 1991년 12월부터, 그리고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재포장물 회수의무는 1992년 4월부터, 판매용포장물 회수의무와 음료용기에 대한 예탁금제도는 199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업자 및 판매자가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폐

기물 회수의무와 예탁금제도 적용을 면제한다.

폐기물규제는 향후 폐가전제품 및 폐차 등에도 파급, 적용될 전망이다.

Ⅱ. 환경규제와 국제통상질서

1. 무역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수단

(1) 이론적 근거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비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규제수단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가.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모두 GATT 20조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b항)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항)

제약국단에 제출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제약국단에 직접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한 조치(h항)

현재까지 16개국이 (b)항에, 9개국이 (g)항에, 그리고 10개국이 (h)항에 의거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규제대상품목은 농산물과 화학물질이 대부분이다.

나. 기술규제

기술규제는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 The 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협정은 인간의 안전, 동식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이유로 하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통보한 기술규정수는 모두 211건이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유해물질부문 87건(41.2%), 대기오염부분 71건(33.6%), 소음방출부문 20건(9.4%)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에서는 현재 환경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3) 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와 무역효과

OECD의 조사(1988)에 의하면 환경규제수단은 153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능별로 크게 직접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과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 구분된다.

환경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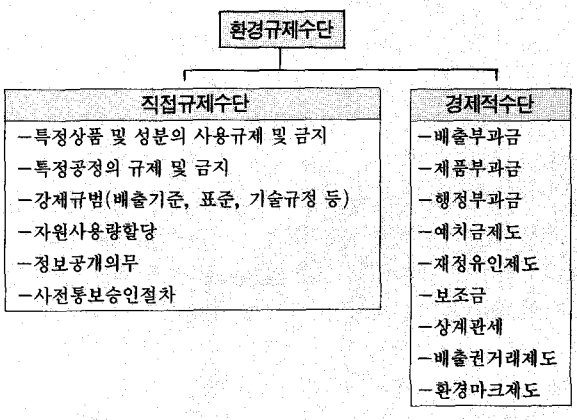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